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829]
의견서

2020. 8.

[사] 오픈넷



대표자: 황성기

주소: [우]06650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50길 62-9, 402 (서초동, 한림빌딩)

전화번호: 02-581-1643 팩스: 02-581-1642

1. 법안 요지

- 본 개정안은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청구 기간을 늘리고, 문화체육부장관이 언론중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가짜뉴스를 보도한 언론사 등에 시정명령을 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음.

2. 언론중재법의 근본적 입법목적과 부조화

- 언론중재법은 인격권과 언론의 자유 충돌 상황에서 사법부의 판단 이전에 당사자의 합의에 기반한 조정·중재 절차를 통해 양 기본권을 조화롭게 보장하면서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임.
- 악의적이고 심각한 허위 보도에 대해서는 현행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법원의 가처분 절차 등을 통해 사법부 판단에 따른 예방 및 구제가 가능하며, 구태여 언론중재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장할 이유를 찾기 어려움. 또한 언론중재위원회가 피해 당사자의 의욕과 무관하게 타인의 법익 침해 사항을 심의하거나, 사회적·국가적 법익 침해 사항을 심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시정명령을 요청하도록 하는 것은 언론중재법의 위와 같은 근본적 입법 목적을 벗어난 규제로 보임.

3. 국가권력의 검열에 의한 언론의 자유 침해 위험

- 국가기관인 언론중재위원회의 요청으로 국가적·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허위보도, 이른바 ‘가짜뉴스’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언론사에게 시정명령을 하고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삼는 내용의

규제는, 결국 국가기관이 ‘허위’와 ‘진실’을 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표현의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국가의 표현물 ‘검열’이라 할 것임. 이는 반정부적 여론을 차단하고 억압하는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기 때문에 민주국가에서는 금기시되는 규제 방식임.

- 또한 한 표현물 내에서 '사실의 적시'와 '의견', '평가' 등을 명백히 구별하는 것은 어렵고, 어떠한 사실이 ‘진실’인지 ‘허위’인지를 중국적으로 판가름하는 작업은 매우 어려운 일임. 어떠한 사실이 ‘허위’인지 ‘진실’인지에 대한 판단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대개 일정한 사실의 주장자가 당시까지 해당 사실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하면 ‘허위’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고, 사실의 존재는 증명하기 어렵거나 증거를 가진 측에 의하여 조작·은폐되어 끝내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음. 법원의 판결조차 유죄의 증거가 없어 무죄 결론이 나오는 경우도 많음. 따라서 내용의 ‘허위성’만을 이유로 표현행위를 함부로 규제해서는 안 됨. 헌법재판소 역시 위 전기통신기본법 위헌소원에서 “허위사실이라는 것은 언제나 명백한 관념은 아니다. 어떠한 표현에서 ‘의견’과 ‘사실’을 구별해내는 것은 매우 어렵고, 객관적인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는 것 역시 어려우며, 현재는 거짓인 것으로 인식되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그 판단이 뒤바뀌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허위사실의 표현’임을 판단하는 과정에는 여러 가지 난제가 뒤따른다”는 보충의견을 낸바 있음.¹⁾

4. 결론

- 본 개정안은 헌법상 원칙에 위반하여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알 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할 위험이 높은 법안으로 철회되어야 함.

<끝>

1) 헌법재판소 2010. 12. 28. 결정 2008헌바157, 2009헌바88